다남123지구 (계양 10)

지구단위계획에 대한
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
[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분]

■ 범 례

- 지구단위계획구역
- 지적경계선
- 건축한계선
- 공동개발 (권장)
- 차량진출입불허구간
- 공 원
- 녹 지
- 주차장

용 적 률	층수(높이)
건 폐 율	-

200% 이하	4층(15M)이하
60% 이하	-

0 10 20 40 80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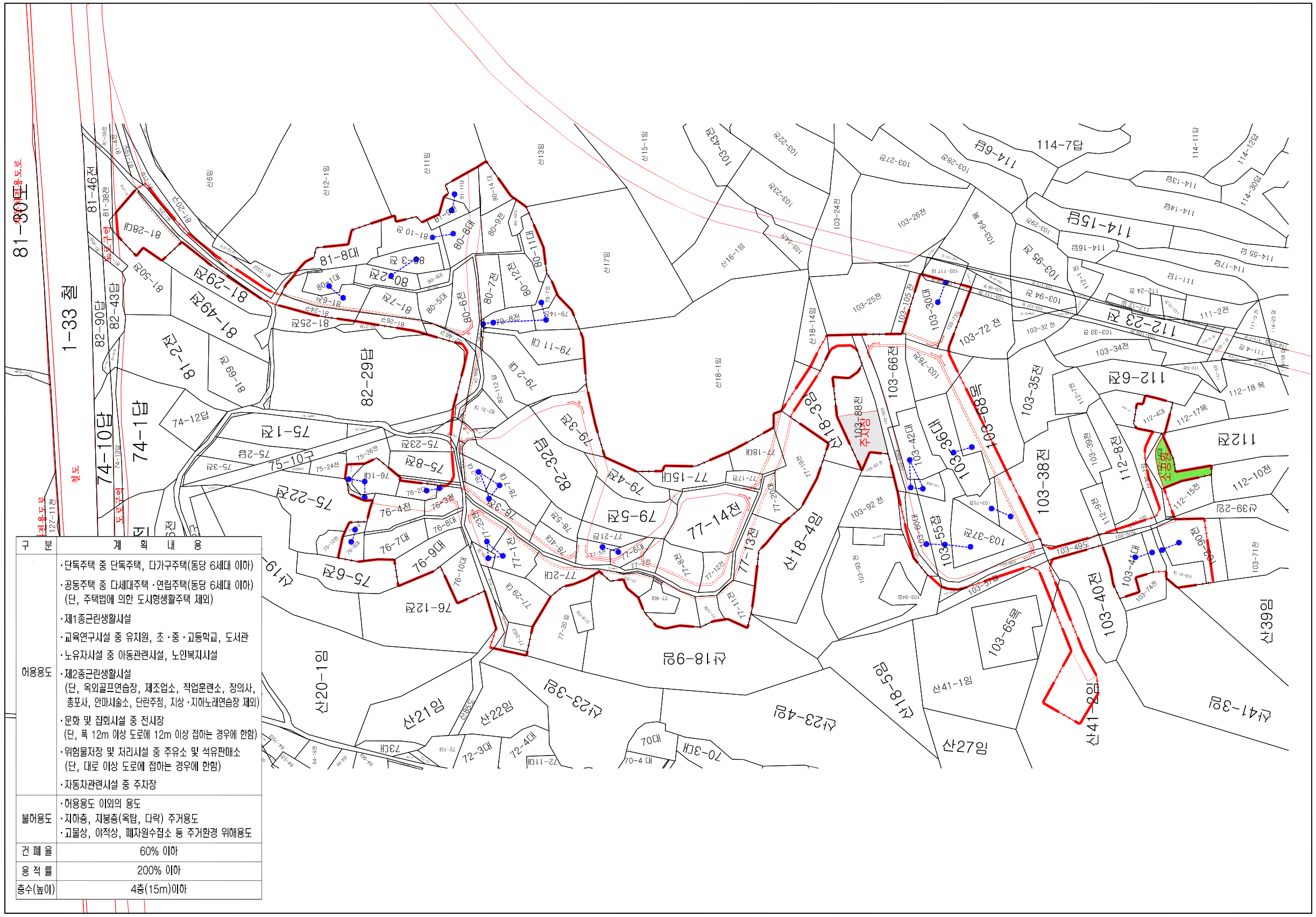

구 분	계 획 내 용
허용용도	·단독주택 중 단독주택, 다가구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·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·연립주택(동당 6세대 이하) (단, 주택법에 의한 도시형생활주택 제외) ·제1종근린생활시설 ·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교, 도서관 ·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, 노인복지시설 ·제2종근린생활시설 (단, 옥외골프연습장, 제조업소, 직업훈련소, 장의사, 총포사, 안마시술소, 단란주점, 지상·지하노래연습장 제외) ·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(단, 폭 12m 이상 도로에 12m 이상 접하는 경우에 한함) ·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(단, 대로 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) ·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
불허용도	·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지하층, 지붕층(옥탑, 다락) 주거용도 ·고물상, 야적상, 폐자원수집소 등 주거환경 위해용도
건 폐 율	60% 이하
용 적 률	200% 이하
층수(높이)	4층(15m)이하